

[회의록]제199차 이사회 회의록 - 강원의료사회협80차

1. 회의일시: 2024년 6월 17일(월) 오후 6시 30분
2. 회의장소: 무위당사람들 교육장(중앙로 83, 4층)
3. 회의참석: 이광희 이사장, 박준영 부이사장, 신승훈 전무이사, 염은경, 천혜란, 최효심, 김태성, 서연남 (이상 이사, 총 8명)
참관 : 공영훈
불참 : 이윤승, 정연우, 김선기, 이창호, 김유미, 차운정, 김은주(7명)
4. 성원보고
- 이광희 이사장(이하 의장)이 성원 15명 중 8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제199차 정기 이사회의 개회를 오후 6시 30분에 선언하다.
5. 전차회의록
- 의장이 4월 18일(목) 제198차 이사회 전차회의록을 낭독하고 의견을 물은바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승인하다.
6. 보고안건
- 의장이 의안을 순서대로 상정하고 별첨되어 있는 자료를 확인한 후 신승훈 전무이사에게 안건에 대해 설명해줄 것을 요청하다.
- 신승훈 전무이사가 논의안건을 보고하다.
7. 논의안건

제1호 의안 : 2024년 4월 ~ 5월 신규 가입 조합원의 가구원 이용 승인의 건

1. 제안 배경
- 협동조합기본법 및 정관에 따른 신규 가입 조합원 및 그 가족이 조합 보건-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조합 공급고 산정의 100분의 50범위를 유지함.
2. 제의관계조항
- 제41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 1.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- 제58조(사업의 이용)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조합원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.

② 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.(6차 개정)

1.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
2.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
3.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
4.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(7차 개정)
5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
6.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
7.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·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·거소·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(7차 개정)
8.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
9.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건·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7차 개정)

③ 조합의 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으로 한다. 이 경우 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건·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 승인을 받으면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공급고를 산정한다.

3. 제안 내용

- 4월 신규 조합원(4명, 3명(가구원)) : 조일구, 임길순(이진태, 이민지), 현금연(이상철), 김연옥

- 5월 신규 조합원(13명, 20명(가구원)) : 채희승(김윤애, 채하준, 채수민, 한계영), 최미자, 윤정례, 김향금(이인철, 이주완, 이주열, 이주형), 박영화(고현철), 이경희(하동우), 양승완, 하태화(원영진, 원서윤, 원윤권), 이병춘, 허유정(이승현), 김현희, 정미란(김홍기, 김다영, 김다예), 김경아(원종호, 원호준, 원호영)

총 17명(세대) *총조합원수 1,637명(24년 5월 31일 기준)

- 이상의 조합원과 그 가족에 대한 조합 의료기관 이용을 승인 주문함.

-> 결정 사항 : 원안대로 승인하다.

- 추가 의견 -

□제2호 의안 : (협동모델)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범사업 추진의 건

1. 제안 배경

- 조합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 준비 중인 돌봄사업소(존엄케어 요양원)의 추진은 현 상황에서 추진 시점까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 되고, 의료사업소의 확장도 어려운 상황임.
- 이에 협동조합 모델로 작게 시작하되 존엄케어, 돌봄에 대한 관심과 동기부여 등을 만들기 위한 시범사업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.
- 돌봄사업소 中 소규모, 마을, 공동체, 주민간 돌봄 실천이 가능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시범사업을 추진코자 함.

*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치매나 중풍,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·요양,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함.

*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일반 가정집과 비슷한 환경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큰 상가에 입점해 있거나 단독 건물을 사용하는 요양원과 다르게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, 빌라 등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의 경우 아파트(공동주택)에 있는 경우도 있음.

2. 제의관계조항

- 제41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 1.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- ② 이사회는 제57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
위원회 설치·운영규정

제1조 【목적】

이 규정은 정관 제41조제3항에 의거 조합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【적용범위】

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제3조 【위원회의 설치 및 의사】

- ① 조합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이사회 결의로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조 【위원회의 위원】

- ① 위원회의 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.
- ② 위원회의 위원 정수와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
제5조 【위원회의 직무】

- ① 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위원회가 스스로 심의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
- ② 위원회는 이사회 및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.
-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.

제6조 【실비지급】

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위원 여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 【시행일】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[제1차 제정] 2015년 4월 17일

3. 제안 내용

- (가칭) (협동모델)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범사업 추진 승인
- (가칭)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추진위원회 구성
(박준영 부이사장, 신승훈 전무이사, 천혜란 이사 +@)

-> 결정 사항 : 원안대로 승인하다.

*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추진위원회 구성(박준영, 신승훈, 천혜란, 최효심)

- 추가 의견 -

- 최효심 이사 : 위원회 위원으로 정금남 대의원을 추천(선요양원 운영 중)

□제3호 의안 : 상반기 “대의원 소통의 날” 추진의 건

1. 제안 배경

- 총회 때만 참석하는 대의원 문화가 아닌 대의원들과 소통하고 같이 조합을 만들어 가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매년 사업계획에 대의원 소통의 날을 계획하여 추진해 오음.
- 상, 하반기로 나뉘어 대의원 소통의 날을 추진할 계획이며, 상반기에는 7월에 추진코자 함.
- “대의원 소통의 날” 내용으로는 돌봄 관련 워크샵, 대의원 역량강화 교육, 대의원·임직원간 소통(교류)의 장 등을 고려 중이며, 많이 모일 수 있고 효과적인 방안을 고려하여 대의원의 활동 참여 확대와 역할 확립 등을 만들어나가코자 함.
- 또한 아이쿱과의 연대협력 중단 후 결과 등을 보고하고 여러 의견(건의사항, 불만 사항, 애로사항 등)도 청취코자함.

2. 제의관계조항

- 제41조(이사회 의결사항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 - 1.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3. 제안 내용

- 상반기 “대의원 소통의 날” 추진 일정 및 프로그램 내용 확정

-> 결정 사항 : 지역별 대의원 모임(동별, 구역별)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소규모 모임으로 추진됨에 있어 각 임원들이 지역모임장으로 참석하여 이끌어가는것으로 하다.

- 추가 의견 -

- 신승훈 전무이사가 지역별 대의원 구분 및 임원들 참여 지역 분배하여 공유

□제4호 의안 : 상임임원 보수규정 개정의 건

1. 제안 배경

- 현재 상임임원 보수규정은 2017년 2월 16일 제정 이후 개정되지 아니 함.
- 현 경영 상황을 고려한 상임 임원 및 비상임 이사에 대한 보수 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임.
- 개정을 통해 향후 조합 경영 활동에 참여하는 임원들의 역할 및 책임감 등 고취

- 별첨) 상임임원 보수규정

2. 제의관계조항

- 제41조(이사회회의 의결사항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3. 규정,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

3. 제안 내용

- 상임임원 및 비상임이사 보수규정 개정 승인(자료 별첨)

-> 결정 사항 : 제5조(지급기준) 1항의 “기타 회의 등에 대한 적용 여부는 사무국과 협의 후 결정한다” 에서 “기타 회의 등에 대한 적용 여부는 이사장이 결정한다” 로 문구 수정 후 안건을 승인하다.

- 추가 의견 -

- 이광희 이사장 : 사무국과 협의 후 결정은 누구와 인지? 애매모호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사장이 결정한다 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.

□제5호 기타 논의 안건

기타 논의 안건 1 : “제5기 대의원” 선출 및 활성화를 위한 TF팀 승인의 건

1. 제안 배경

- 제4기 대의원의 임기가 24년 12월 31일 까지임.
(임기 3년, 22년 1월 1일 ~ 24년 12월 31일)
- 제4기 대의원(추가 선출)의 임기는 25년 12월 31일 까지임.
*아이쿱 연대 협력에 따라 선출된 11명의 대의원
(임기 2년, 24년 1월 1일~ 25년 12월 31일)
- 임기가 다른 이유는 연대 협력에 따라 23년 총회에서 대의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이고, 연대 협력 중단에 따라 24년 총회에서 다시 3년으로 변경 함.
- 제5기 대의원의 임기는 3년임(25년 1월 1일 ~ 27년 12월 31일)
- 매 기수 마다 대의원 선출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으며, 선출 대의원들과의 활동, 소통, 역할 등 부재로 대의원 선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.

2. 제의관계조항

- 제41조(이사회회의 의결사항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7.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

3. 제안 내용

- 제5기 대의원 선출 및 활성화를 위한 TF팀 구성(이사장, 부이사장, 전무이사+@)

-> 결정 사항 : 원안대로 승인하다. TF팀 구성(이광희, 박준영, 신승훈)

- 추가 의견 -

- 제안내용 :

-> 결정 사항 :

- 추가 의견 -

서 명

의장 이광희

이사 박준영

이사 김태성

이사 서연남

이사 염은경

이사 신승훈

이사 최효심

이사 천혜란